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구 미 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구미시는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 접목·발굴 및 실증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자 함
- 금오테크노밸리 내 스마트커넥트센터 3~4층에 메타버스 분야 종합 지원 센터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사용료 감면
 - 위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26, 스마트커넥트센터 3~4층
 - 사용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사용(감면)기간 : 2022. 11. 1. ~ 2024. 12. 31.(2년2개월)
 - 사용면적 : 1,696.34㎡(전용면적 1203.86㎡, 공용면적 492.48㎡)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20호, 제17조 5항 2의2호

4. 참고사항

○ 스마트커넥트센터 개요

- 위 치 :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26(금오테크노밸리 내)
- 건 립 비 : 126억원(도 37.8, 시 88.2) ※ 준공일 : '20. 11. 13.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5,858.6m²
- 건축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운영방법
 - 건물 운영 및 관리 : 구미시(신성장산업과) 직접운영
 -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주관기관)

○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사업 개요

- 위 치 :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26, 스마트커넥트센터 3~4층
- 규 모 : 연면적 1,696.34m²
- 사업기간 : 2022. 7. 1. ~ 2024. 12. 31.
- 총사업비 : 180억원(국비 60, 경북 60(도 18 시 42), 기타 60)
- 사업내용 : 메타버스 실증지원, 지역 특화사업 발굴, 인재양성, 허브 인프라 구축 등

- 추진현황

- 2022. 4. 29. :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사업 공고
- 2022. 5. 30. : 사업계획 접수(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 2022. 6~7월 : 발표평가 및 사업 선정
- 2022. 7. 1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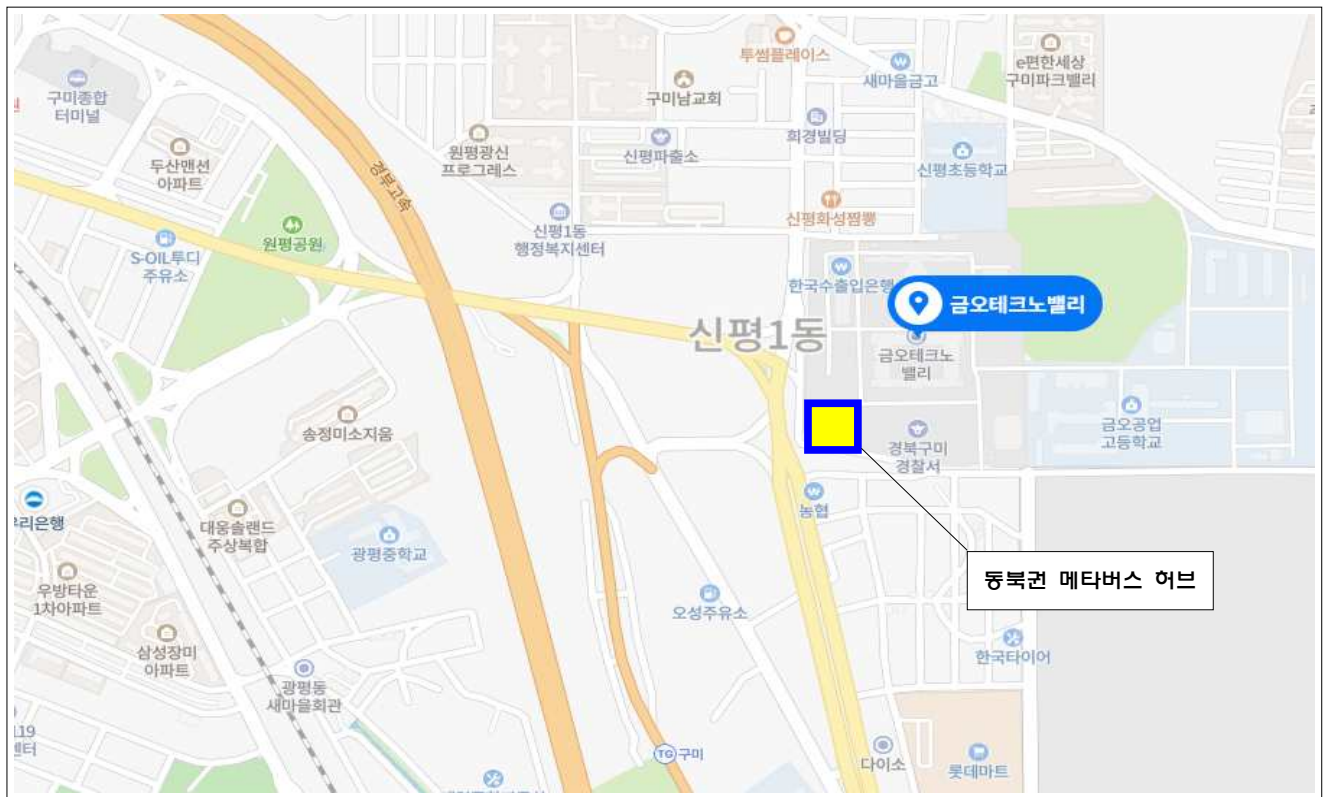
- 향후추진계획

- 2022. 10월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의회 동의
- 2022. 11월 : 센터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기술적) 메타버스 관련 기술기반 저변확대
- (경제적)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기여
- (사회적) 동북권 메타버스 산업 확대와 관련 중소기업 육성

위치도



조감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사업 발굴, 메타버스 실증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연간 임대료 : 약 65,717천원)

- 계산식 = 전용 단위면적 × *월사용료 × 사용개월 수

$$= 1203.86\text{m}^2 \times 4,549\text{원} \times 12\text{월}$$

$$= 65,717,230\text{원/년}$$

*월 사용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

4. 작성자

- 신성장산업과 신산업전략계장 신주선(6151)
- 신성장산업과 주무관 황보수연(6153)

소 관 부 서		신성장산업과
입 안 자	과 장	조 영 열
	담 당	신 주 선
	담 당 자	황 보 수 연 (480-6153)